

신문의 보도와 명예 · 인권

竹田 掄

동경고등법원 판사

본고는 1983년 11월 일본신문협회가 주관한 「지면심사전국간담회」에서 현직 판사인 竹田씨가 행한 강연요지이다

.....편집자주

법률상의 책임과 자율규제기준

일본의 법률은 신문의 보도와 명예 · 인권침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709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문제로 다루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가 법률상의 책임을 질 기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와 보도의 자유와의 저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신문보도와 명예 · 인권의 문제는 법률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현실적으로 제기되었던 신문보도와 명예 · 인권문제를 살펴보면 법률상의 책임을 떠나서 신문보도가 갖는 사회적 의의와 인권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법률상의 책임의 유무와 윤리적 · 사회적 보도기준은 때로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상의 책임이 없더라도 보도에 의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인권문제로부터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 두 가지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항공기의 羽田 사고시 기장의 실명보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 문제에 관해 각지는 당초에는 한결같이 실명보도를 했으나, 기장의 정신상해가 문제가 되어 정신위생법에 의한 조치입원수속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실명에서 가명으로 보도방향을 바꾼 신문이 많았다. 그러나 최후까지 실명보도로 일관한 신문도 있었다.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실명보도를 불허하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 그러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실명보도가 당연히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법률상 실명보도는 위법은 아니나(법률상의 책임은 없다), 실명보도는 본인을 포함한 관계자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삼가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여기에 신문윤리강령을 비롯하여 각 신문사가 마련하고 있는 보도기준이 갖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기장의 성명보도에 관해서는 결론을 말한다면 실명보도에는 법률상의 책임은 없다. 윤리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론은 피하겠지만 나로서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일 경우 실명보도도 부득이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된다.

규제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률적인 기준설정은 언론통제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준의 설정이야말로 진실된 의미에 있어서의 보도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재판계정중의 보도에 관해

공개중인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이 행한 변론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몇 건 공표되어 있으나, 법원은 소송상의 공격 방어를 위해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인용해야만 할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 그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검찰관의 논고가 명예훼손으로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증인의 증언에 대해 명예훼손을 걸어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도 있다.

신문이 이 같은 법정의 상황, 진술 등을 보도한 사실을 가지고 명예 또는 인격권의 침해로서 다루어진 사례가 적어도 공간 된 판례집에는 없으나 이를 법률문제로서 생각해 보면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행해지고 증언은 선서하고 난 뒤의 진술이며 또 위증죄의 제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보도가 재판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한 법률상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법에서도 이 원칙은 시인되고 있는 것 같다.

본래 진실을 왜곡한 보도나 각색되고 과장된 보도에 의해, 피고인이나 관계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법률상의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 된다. 다만 수사당국의 발표에 근거한 보도라도 보충적인 증거 취재 없이 게재된 보도에 의해 신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법정의 상황에 관해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일 경우 진위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원칙은 인정되나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그 사건에서 이미 조사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이 모순되고 증언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혹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동요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명확하게 의문시되는 경우에, 단순하게

증언내용을 보도하면 독자에게 그 증언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재판의 경위라든가 진술의 의문점 등을 밝힘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규제기준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배려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적지않다.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적용이며 민사재판은 사적 분쟁의 공권적 해결인데 재판에 올려진 이상 공익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범죄라고 하더라도 죄질, 위법성, 반사회성, 범정이 모두 달라 어떠한 규모, 내용의 기사라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민사재판의 경우 이혼소송을 비롯 개인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많아, 소송을 제기한 이상 보도되더라도 하는 수 없지 않느냐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판결보도에 관해서도 공통점이 있다.

한편 정신장애자의 실명보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판도중에 정신장애자임이 밝혀졌을 경우, 예를 들면 정신장애에 의한 심신상실이라는 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 단계에서 익명으로 한다는 취급방법이 없다. 이 경우 실명보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인권보호의 견지에서 실명보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삼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범죄의 내용, 중대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지만 가명으로 하는 편이 타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판결보도에 관해

판결보도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고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민은 당연히 이를 알 권리를 갖는다.
2.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행해지며 그곳에서 밝혀지는 사실은 그것이 실령 사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적인 사실로서 미국 법에서의 이른바 공공의 이익의 법리, 혹은 유명인의 법리가 원용된다.

따라서 판결보도는 실명보도일지라도 보도내용이 정확한 이상 원칙적으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잘못된 보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판례로서는 1951년 3월 28일의 神戸지법판결이 있다. 즉 기소사실의 대부분인 수표위조가 무죄,

일부에 불과한 금전위탁증서위조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있었는데 전부 유죄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기사에 대해 신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실명에 의한 판결보도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년법 61 조(가정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소년 또는 소년 시에 범한 죄에 의해 공소를 제기 당한 자에 대해서는 이름,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에 의해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본인이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지 기타의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국가의 시책상 실명보도가 금지되는 경우이다. 또 정신장애자에 대해 형사판결보도에서는 주로 법률상의 책임보다는 규제기준의 문제로서 생각하는 편이 좋으나 민사판결 등에서의 사안보도는 법률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론으로서도 민사판결의 보도는 특히 문제가 있다. 민사재판에는 사인과 국가와의 분쟁이 있는가 하면 이혼소송을 비롯하여 남녀관계를 둘러싼 각종의 분쟁 등 갖가지 형태가 있다. 민사재판에 제소하는 것은 공적 해결에 맡기는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이미 공공성을 갖게 됨은 부정할 수 없으나 민사재판에 가지고 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건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사생활이 공개되어도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사판결의 실명보도에 법률상의 책임은 없으나 당해 분쟁의 내용, 실태에 비추어 실명보도가 현저하게 본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의 법리적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판결보도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실명보도일지라도 법률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판결보도의 의의

판결보도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했는데 이를 한층 더 깊이 검토해 보면 판단보도가 갖는 사회적 의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1. 「누구」에 대해 어떤 재판이 있었는지, 즉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여기에서 「관심」이라는 것은 전국지의 경우 국민적 관심일 것이며, 일정한 지역에서만 발행되는 신문이나 지방판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의 관심으로 좁혀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저명인(유명인)의 법리의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가령 경미한 범죄, 혹은 사적 분쟁이더라도 누가 어떤 범죄를 범하고 어느 정도의 형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사건에 관계했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독자의 관심사일 것이며

실명보도는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법리의 적용을 받는 자라도 한 나라의 총리와 지방의 한 공무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반사회성이 미약하더라도 그 보도로 인해 일가가 길거리에 나서게 되는 사태도 일어난다. 따라서 단순 획일적인 취급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재판이 있었느냐, 즉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 전술의 소년 사건 등의 예외 사례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판결보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보도에서는 사회방위상의 이익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 자료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실명보도는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어느 한도에서 실명을 밝힐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배려해야 할 문제이다.

(나) (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민사재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 의료사고, 교통사고, 사소한 다툼, 이웃간의 분쟁, 이혼, 인지, 상속 등의 신분관계상의 소송 등 열거하기 어려우나 거기에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판결보도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이 있었는지에 사회적 의의가 있고 독자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어도, 「누가」라는 부분은 본래 관심사일 수 없으며 「누가」에 대해 보도할 사회적 의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기사에 있어서는 차츰 이런 류의 기사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건보도는 실명이 당연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실성이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언론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신앙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 때문에 쓸데없이 개인적흥미를 돋구는 기사가 되고 혹은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위태롭게 한다면 실명보도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1983 년도에 있는 3 개의 판결보도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본다.

우선 大阪 지방 법원 1982 년 4 월 19 일 「サラ金」 무더기 대부 무효판결. (주: サラ金は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 또는 업자를 뜻하는 일본 약어이다)

「サラ金」, 특히 강압적인 대부방법과 회수방법이 커다란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이 판결보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 그러나 만일 원고인 주부를 실명보도 한다면 「サラ」 금으로 돈을 빌리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주부에 대한 사회의 눈길이 따듯할 수가 없다. 이 판결보도는 그 강압적인 대부가 무효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그것의 보도만으로 충분하며 실명보도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다.

다음은 名古屋 지방 법원 1982년 7월 19일 만원전차좌석분쟁손해배상사건.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이 소송으로 번져 판결이 나면 어떠한 판결이 될 것인가 하는 독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므로 보도의 의미는 있다. 그러나 실명보도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리의식의 높은 수준을 평가하기 보다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식으로 눈총을 받지 않을까. 실명을 내지 않더라도 독자의 관심에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2년 9월 10일 시 버스 운전사의 면직처분취소사건. 이러한 행위로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보도의 의미가 있다. 면직이 취소되고 그러한 의미로 원고의 주장이 관철되었으므로 실명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승소했으므로 실명보도해도 좋다고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무죄판결이라도 그때까지 체포, 기소단계에서 보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인권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인인소송」 (이웃간의 소송) 판결보도에 관해

우선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청구액의 약 18%로서 70%에 달하는 대폭적인 과실상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패소인데도 승소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사건으로 말한다면 이 비판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추궁하는 데는 금전배상의 청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웃의 아기를 맡았다가 죽게 한 책임을 인정한다든가, 사죄광고, 사죄문 수교 등의 방법은 화해할 때는 가능하나 소송상의 청구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 이러한 금전배상소송에서는 인정액이 청구액과 같든가 청구액에 가깝지 않으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와,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손해배상소송을 이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잘라서 나누는 것은 위험한 일이나 본건은 후자로서의 의미가 강해 원고가 승소했다고 하는 보도방식에 합리성이 있다.

다음에 보도내용을 보면 우선 「제목」은 펍 정서적이었으며 이웃(인인)의 호의에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놀라움과 간접적인 비판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이 법원에 대한 재판비판이 아니라는 것은 기사내용에서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실명보도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예상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것은 그것이 전화나 서신에 의해 비난, 중상이 쇠도한 사실이 아닐까.

실명보도를 하려면 적어도 왜 소송에까지 발전했는지의 배경과 이러한 경우의 법률상의 책임은 결국 금전배상의 형태를 취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비난·증상은 아이를 봐달라고 맡겨놓고는 죽었다고 해서 재판에 걸어 돈을 뺏다니 껄스름하다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닐까. 이 점에서 보도의 방법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보도의 사회적 의의가 어디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 연못이나 저수지 등이 산재해 있는 곳에 주택이 서게 되고 혹은 개발 때문에 파여진 곳에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방치되어 이러한 연못이나 물웅덩이에 아이들이 빠져죽는 사고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류의 사고를 둘러싸고 민사재판이 제기되는 일도 적지않으며 신문에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판결보도를 해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연못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해 민법 717 조(토지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2 조 1 항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아이의 사망사고가 그 아이를 맡은 자 혹은 그 아이를 감시해야 할 입장에 있는 양친의 책임과 관련하여 소송이 된다면 그 판결보도는 사회적 의의가 있음이 분명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만큼 전화, 서신이 쇠도했음은 사회적 관심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보도의 의미는 그러한 점에 있는 것이며 어디 사는 누구의 양친이, 어디 사는 누구의 양친을 제소했느냐는 데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가명이더라도 그 보도의 가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실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한 보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이 다투는 민사소송 인데 매스컴이 그와 같이 크게 취급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내용에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때문이므로 굳이 개인의 이름을 내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손상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 담당자의 반성은 전체 매스컴의 반성이기를 바라고 싶다. 그리고 이를 다음에 있을 판결보도에서 살려주도록 바라고 싶다.